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409호

다. 제출일자 : 2023. 10. 16.

라. 회부일자 : 2023. 10. 23.

2. 제안사유

- 1일 주차요금 신설로 장시간 주차장 이용 시민에게 과도한 주차요금의 부과 방지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
- 일상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대를 위해 국가보훈부의 요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
- 관련 법령 개정, 관련 조례 제정 등에 따라 조례 및 조문 내용을 일치시켜 시민 혼선 예방

3. 주요내용

- 가.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안 별표 1)
- 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
 -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월정기권 할인조항' 삭제 (안 제25조의4, 별표 1 비고제9호 삭제)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신설(안 제25조의 5 등)
- 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조문 정비(안 제25조제3항 개정, 제25조제4항 및 〈별도1〉〈별도2〉 삭제)
- 라.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조문 통일(안 제25조의3 개정)
- 마.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명칭 개정(별표 2. 5.)
- 바. 조문 내용 중 관련 조례 명칭 개정(안 제21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주택법 시행령」, 「서울 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 참조

※ 2024년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市 예산담당관 및 의회 협조 필요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23. 8. 17. ~ 9. 6.)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 수요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노외주차장에 '1일 주차요금'을 신설하고(안 별표 1), 보훈 예우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안 제25조의5)하며,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2, 안 제25조, 안 제25조의3, 안 별표 2 등)

나. 검토의견

■ 1일 주차요금 신설(안 별표1)

○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등에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 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¹)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6조 및 [별표 1]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도시철도역 접근성 등을 기준으

^{1)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수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로 1~3급지²⁾ 체계로 나누고 주차장에 따라 1회, 1일, 월정 기권 등³⁾으로 요금을 세분화하여 차등부과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조례에서 노외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는 달리 1일 주차권을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지역행사, 업무출장 등 일시 적으로 발생되는 장기주차 수요와 관련하여 주차편의 제공이 필요하고, 월정기권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회 주차시 5분당 요금이 적용되어 과도한 주차요금 발생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주차요금 신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노외주차장 1일 주차요금'을 규정하여 노외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한

-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다. 3급지: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3) 「주차장법」 제2조(정의)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u>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u>: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예: 거주자우선주차)
 - 나. <u>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u>: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예: 공원 등 공공시설 주변의 지상주차장, 별도의 주차장 전용 건물 등)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비고

^{3.}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내용(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구 분	1회 주차시	1일주차권	1회 주차	월 정 기 권					
현행		5분당	(야간에 한함)	5분당		전 일		야 간		
27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	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1일주차권	1회 주차시	1일		월 정 기 권			
		5분당	(야간에 한함)	5분당	<u>주</u> 차	요금	전 일	야 간		
개정안	1급지	500	5,000	400	28,0	8,000 250,00		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	000	180,00	0 60,000		
	3급지	150	3,000	150	<u>10,0</u>	<u>000</u>	100,00	0 40,000		

○ 또한, [별표 1] 각주 하단에서 '1일 주차요금을 1시간 환산요금의 6배로 적용하고,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요금을 받도록 하는 것'4)은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5)와 서울시 민영주차장6)에서 운영

^{5) 6}대 광역시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 제도 비교(1급지 기준)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책정 비율			
광역지자체	시간제주차 (1시간기준)	1일 주차	월 정기권 (주간)	시간요금 대비 (1일주차권/1시간)	정기권 대비 (1일주차권/월정기권)		
부산광역시	4,200원	21,000원	220,000원	5배	9.5%		
대구광역시	2,500원	10,000원	100,000원	4배	10.0%		
인천광역시	2,000원	10,000원	100,000원	5배	10.0%		
광주광역시	2,000원	12,000원	130,000원	6배	9.23%		
대전광역시	1,900원	12,000원	140,000원	6.3배	8.57%		
울산광역시	1,000원	10,000원	80,000원	10배	12.5%		
평 균				6.05배	9.96%		

[※] 각 지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참고

^{4) (}개정안) 개별주차장 1일 주차요금은 1시간 환산요금의 6배를 적용하며,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

하는 1일 주차요금 현황, 계산 용이성 등의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접근성이 우수하고 회전율이 높은 노외 공영주차장에 1일 주차차량이 늘어날 경우 단시간 주차차량이 이용하지 못할 우려도 있는 바, 주차이용 효율화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공영주차장이지만 자치구가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의 경우 서울시 요금체계를 따르고 있으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개정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임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신설(안제25조의5)

○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1)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

○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제3항7)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 민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은 1시간 요금의 평균 6.2배 징수

구 부	전체평균	주차	-장
। ਦ	(1,074개소)	민간부설(569개소)	민영노외(478개소)
1일주차/1시간요금	6.2배	6.9배	5.3배

^{7)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⁶⁾ 공영노외주차장 1일 주차요금 도입 계획(주차계획과-8449호, 2023.7.31.)

⁻ 서울주차정보안내 민영주차장 총 2,345개소 중 1,074개소 대상 조사분석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개정할 때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 자에 대한 예우시책 확산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 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건의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존중과 예우를 다하고 보훈을 일상 속에서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동 조례개정의 취지는 이해된다 할 것임

○ 한편, 「주차장법」제6조제2항⁹⁾에서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8)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 협조요청(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1361, 2023.2.23.)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 재협조요청(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3098, 2023.5.2..)

⁻ 서울시, 국가보훈부와 손잡고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정책 추진(2023.6.22. 市 보도자료)

⁻ 서울지방보훈청장과의 시장 건의, 서울특별시장 YTN 인터뷰(2023.7.20.) 등

^{9) 「}주차장법」제6조(주차장 설비기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있다는 점에서 현행 조례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규정한 것도 문제가 없다 할 것임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부설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변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가족배려, 임산부 주차구획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과 예우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의 설치10)는 타당하다 보여집

※ 서울시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획 세부 현황 ('23.11.30.기준)

	구획면 총계	일반	장애인	가족 배려	임산부	경차	전기차	환경 친화	나눔카
공영 주차장	18,006	13,802	612	2,007	161	381	211	549	283
(131 개소) ———	100%	76.65%	3.40%	11.15%	0.89%	2.12%	1.17%	3.05%	1.57%

¹⁰⁾ 조례개정시 '국가유공자 등 공영주차구획' 설치대상

	합 계	시 공영주차장	시 공공부설주차장
주차장 개소	114개소	54개소	60개소
주차장 구획수	704면	255대	449대

- 한편 동 조례개정안에서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우선주차구획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주차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어려 울 수 있는 경우도 감안할 때 필요하다 보임
- 또한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의 신분증 등11) 소지 확인과 이용자가 탑승하지 않을 경우 이동주차 권고 및 제재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서울시가 제출한 비용추계¹²)에 따르면 우선주차구획 설치시 1 구획당 250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가족배려주차장의 경우 1구획당 400천원¹³)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적 정 비용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할 것이며, 보훈대상자의 예우 등에 대한 충분한 시민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될 수 있도록 우선 주차구획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홍보가 필요할 것임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 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중략)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¹²⁾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비용추계: 시 공영주차장 700면*250천원 =175,000천원

^{- 1}구획당 기존 삭선 및 신규도색 비용 250,000원 추정

¹³⁾ 가족배려주차장 비용추계 : 1구획당 기존 삭선 및 신규도색비용 400,000원 추정

■ 나눔카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의무화 삭제 관련(제24조의4)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5조의4¹⁴)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것임
- 서울시는 '13년 2월부터 '22년 12월까지 사업자와의 업무협약15)을 통해 2,549개소 주차장에 나눔카 9,457대 규모로 운영16)하였으나 교통수요 감축효과가 거의 없고, 주요 회사가 시장의 98.5%를 독과점하고 있는 등 당초 의도한 친환경 정책에역행한다는 이유17)로 공적지원을 중단하고 민간 자율경쟁으로전환하고자 '22년 12월 사업종료를 결정18)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운영규모: 운영지점 2,549개소, 차량 9,457대

구	분	힙	-계	서울시 공영 및 공공기관		자치구 공영 및 공공기관		공동주택1)		일반 민간시설2)	
		개소수	차량대수	개소수	차량대수	개소수	차량대수	개소수	차량대수	개소수	차량대수
운영	규모	2,549	9,457	198	500	486	809	423	1,394	1,442	6,754
1) 공	1) 공동주택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2) 일반 민간시설 : 민간주차장, 일반 민간회사, 쇼핑몰 등										

¹⁷⁾ 나눔카 사업진단 및 향후 운영방안 시정연구(2022.6.~9.)

^{1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의4(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인 경우, 해당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나눔카의 배차를 위하여 사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은 별도 5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¹⁵⁾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Car-Sharing)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서

¹⁶⁾ 나눔카 운영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성흠제 의원)

⁻ 사업자: 쏘카, 그린카, 피플카

⁻ 서비스 개시일: 2013. 2. 20. / **2022. 12월부로 사업 종료**

⁻ 회원수: 약 4,310천명,(인천, 경기 거주자 포함) ※ 일평균 9,560건 이용

⁻ 초창기 공공부문의 나눔카 활성화 마중물 역할이라는 최초 사업목표가 달성되었으나,

① 당초 의도한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고 교통수요 감축효과도 거의 없으며,

② 쏘카(상장), 그린카·피플카(대기업계열화) 등 3개 대형회사가 시장의 98.5%를 독점한 상태

대 서울시가 향후 공적지원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독과점 기업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우려되므로 더 이상의 공적지원을 중단하고 "민간 자율경쟁 전환"을 추진

동 조례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내 나눔카주차구획의 활용(안 제25조의4)과 월정기권 할인 조항([별표1], 비고 제9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현재 나눔카 사업자의 대체 영업지점 확보를 위해 '2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업무협약서 제18조19)에 따라 서울시 지원 주차장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신설시 나눔카 구획을 활용하는 계획20)' 등을 감안한다면

서울시는 나눔카 주차구획 원상복구 등의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주차면 복구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¹⁸⁾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향후 추진계획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36360, 2022.12.20.) <주요과제>

①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폐지⇒사업 종료 후 요금할인 즉시 폐지

② 공영주차장 내 나눔카 주차면 회수⇒2024.1월까지 유예기간 부여

⁻ 주차면 회수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협약상 사업자 전액 부담(공영주차장 1,309면)

⁻ 나눔카 충전기 설치면의 경우 나눔카 협약과 관계없이 전기차 배치 유지 추진

③ 나눔카 배치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폐지⇒2023.8.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 감편 혜택 폐지

¹⁹⁾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서 제18조(서울시 지원 주차장의 원상복구 등) 제4조에 의한 협약기간 종료, 제10조③항에 따른 차량철수 및 제16조에 의한 협약의 해지시 "사업자"는 서울시 지원 주차장을 본 협약서 체결일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관련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20)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추진 (서울시 내부자료)

■ 상위법령 등에 맞춘 기준 통일 정비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일부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정비·반영 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안 제25조)

-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중 바닥면 장애인 전용표시 규격 등의 사항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는 것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뿐만 아니라 주차구역선에도 장애인전용표시를 설치하도록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별표1〉에 개정21)되었다는 점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은 조례의 적법성 측면에서 타당할 뿐 만 아니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획의 경우

^{2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별표 1)

⁻ 주차구역선 장애인전용표시 신설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2.9., 일부개정/ 시행 2018.8.1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설치되고 있어 조례 개정시 별도의 시설물 변경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 에서는 추가적인 시설물 변경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파악 후 필요시 조례에 준용하여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상위법 개정이 2018년도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을 준용 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례 개정시 시일이 지연됨으로 인해 시민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2)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안 제25조의3)

○ 동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기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²²⁾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2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u>「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u>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u>가 50개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u>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거.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촉진과 함께 공공기관 등의 주차 기반시설 확보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서울시에서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량의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는 국가정책에 맞춰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심의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 확보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 서울특별시 친환경자동차 등록현황(2017년~2021년)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22.1.24.))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가대수	전년(20년) 대비 증가율	17년대비 증가율
친환경	64,241	84,826	107,056	140,344	184,898	44,554	31.7%	187.8%
수소	13	84	599	1,671	2,445	774	46.3%	18,707%
전기	4,797	9,564	14,952	23,393	40,564	17,171	73.4%	745.6%
하이브리드	59,431	75,178	91,505	115,280	141,889	26,609	23.1%	138.7%

○ 한편, '23년 11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주차구획을 포함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관련법을 준용하여 설치²³⁾되어 있어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23)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현황(총 760면 /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549면, 전기차 충전구획: 211면)

3)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명칭 개정(안 별표2 제5호)

-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2년 2월 원룸형 주택으로 불렸던 도 시형 생활주택의 용어를 소형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상한 기준을 기존 50㎡에서 소 형 아파트 수준인 60㎡로 변경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 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배경은 신혼, 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 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보여짐

4)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조문 내용 개정(안 제21조의2)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명칭에 대해 지난 '22년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 제21조24)25)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24)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5)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시설물에 '학교시설'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난 '21 년에 현행 조례 제21조의2²⁶)를 신설²⁷)하여 '학교에서 설치 하는 부설 주차장의 최고한도를 교육·학예시설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별도로 정해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음

○ 이후 학교 내 교육공간 확보, 학습권 및 안전보장을 제고하기 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인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²⁸⁾되어 '22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명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됨

시설물	최고한도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34m²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등	시설면적 122㎡당 1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200㎡당 1대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68㎡당 1대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6대 / 골프연습장:타석당 0.6대 옥외수영장: 정원 25인당 1대 / 관람장:정원 167인당 1대
6.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466m²당 1대
7. 창고시설	시설면적 534m²당 1대
8.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400m'당 1대

26)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2(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한 시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한다.

^{2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9 / 2778, 2839 병합)

⁻ 상정: 2021.12.17. / 의결: 2021.12.22.

^{2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22.3.3.)

⁻ 발의: 2021.10.15.(의안번호 2838) / 상정: 2022.2.14.(수정가결) / 의결: 2022.2.21.(가결)